

제 818  
1980.12.11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장: 문화공보관 박 종 우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 보

## 차 례

- ◎ 조 계
  - 제 1474 호: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천방법과학교군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 3
  - 제 1475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 3
- ◎ 규 칙
  - 제 1879 호: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중개정규칙..... 4
- ◎ 훈 령
  - 제 57 호 ( 교육위원회훈령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만원봉사실운영규정 4
- ◎ 고 시
  - 제 403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및광장 ) 지적승인..... 6
  - 제 408 호 ( 동대문구고시 ): 동대문구광고물계획정리지구지정고사..... 7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366 호 :	영동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및환지계획변경인가와 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 .....	8
	제 368 호 :	전기용량제조업허가취소 .....	8
	제 373 호 :	KS 표시지정처분공고 .....	9
	제 374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일부준용공고 .....	9
◎	예 규		
	제 398 호 :	서울특별시교압가스사무처리요령 .....	10
◎	정 정		

**조 례**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0.12.1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장갑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474 호

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비교란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감일리 소재 서부국민학교 졸업생은 17 학교군내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8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0.12.11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475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제 2 항중의 가스사용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스 사 용 료		용 구 손 료
기 본 요 금	초 과 사 용 요 금	( 가 스 에 타 기 )
10 ㎥ 이 하	11 ㎥ - 25 ㎥까지 300 원/㎥	350 원
2,900 원	26 ㎥ 이상 370 원/㎥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제는 1980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1981년 1월에 검침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제에 의한 인상 부분의 1/2을 감액 조정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동장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0.12.9.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①

◎ 서울특별시규칙제 1879 호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장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2 조 제 1 항중 "제 3 조의"를 "제 3 조의 2"로 한다.
- 제 4 조중 "보증법"을 "신원보증법"으로 한다.
- 제 5 조중 제 1 항제 1 호에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당연퇴직일 10 일전까지 시장의 정년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58 세까 ~~를~~ 한다"
- 동조 제 3 항 및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 1 항제 1 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동장의 정년연장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장 정년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지킬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동장 정년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훈령제 57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민원봉사실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훈명한다.

1980.12.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민원봉사실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업무 를 신속, 친절,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민원봉사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환경정비) ①민원실은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출입 등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실에는 민원인대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각종 게시물, 간행물, 홍보책자등을 비치하여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 3 조 (민원사무서식 및 전람비치)

①민원실내에는 민원인의 사용빈도가 많은 민원서식과 전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편리할 제공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의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민원서식은 벽이나 기재대위에 전람을 작성 비치하여 신청서 작성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민원사무전람에는 소관 민원사무종류별로 처리, 주무과,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수수료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민원대서 및 안내) 민원창구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글을 쓸 수 없는 민원인의 민원서류를 대서하여 주거나 문의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 5 조 (친절, 공정) ①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물 처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민원인의 사회적 지위, 지면을 이유로 한 민원을 우선처리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과잉친절 또는 민원창구 등으로 초대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전화 및 우편민원처리) ①

일반인의 이용도가 많은 업무 및 단위 반복업무중 전화 또는 우편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호의 민원은 이를 적극 권장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 퇴직증명, 재직증명, 사실증명, 납품실적증명, 각종졸업증명, 성적증명
2. 연수이수확인, 교원자격증발급확인, 각종수상확인

②전항의 전화 또는 우편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도 비치한다.

제 7 조 (복합민원처리) 민원사무중 다수부서와 관련되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는 문서분류권자는 주무부서를 지정분류하여 관련부서와 협의일괄처리토록 한다.

제 8 조 (업무대행자의 지정) ①민원봉사계장이 출장 또는 유고로 인하여 당해업무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하급자가 그직을 대행한다.

②민원창구 담당직원이 출장 또는 유고로 인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일반적인 민원업무의 복주시에는 당업무관련성이 있는 타과제 직원 중에서 사무과장이 해당국·과장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 공백을 초래하거나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 9 조 (중식시간 교대근무) 민원실 근무직원은 중식시간에 정원의 2분의 1씩 교대근무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 (민원실직원교육) 민원실 직원에 대하여는 매월 1회이상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복장) ①민원실근무직원은 근무복을 착용하여 친절하고 절소한 태도로 민원인용 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근무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별하여 관급한다.

제 12 조 (업무처리검열) 교육감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민원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3 조 (상벌) 교육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상황의 검열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 관계자를 엄중문책

조치하고 민원사무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대민봉사에 헌신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인사특전) ①민원실에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능력과 저성에 따라 타부서에 전보한다.

②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자에 대하여 승진 및 근무평정에 있어 인사상의 우선을 부여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40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및광장)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393호(78.12.7)로 결정된 당시 도시계획시설(도로및광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제 13조와 건설부고시제 463호(79.12.10)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0.12.6.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지적승인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연 장	시 점	종 점	비 고
광토		45	m	m	구 로 동	봉천동 (광19)	철도관련구간
			40-80	7,550			1,200 m 제외
"		46	80	1,710	도 립 교	동구로국교앞	
"		48	40	900	도 립 교	안 양 천	
대로	1	48	35	2,200	신도림동	신 정 동	
"	1	53	35	1,400	문래광장	신 길 광 장	
"	2	37	30	6,230	구 로 동	동 손 동	변경구간 220 m 지적승인
"	2	53	30	1,300	문래동 4가	신 도 립 동	
"	2	54	30	4,650	신 길 동	구로동 (광19)	철도관련구간 280 m 제외

나. 광장지적승인 조서

번호	광장명	위 치	면 적	비 고
73	신길광장	영등포구신길동 427 일대	27,500 평	
114	문래광장	" 문래 1가 37 "	8,500 "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동대문구고시제 408 호

동대문구광고물계획정리  
지구 지정고시

1.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시행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  
고물 계획정비 지구를 다음과 같  
이 지정 고시한다.

2. 계획정비 지구내의 모든 광고  
물은 고시일로부터 정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신규제시 및 변  
경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관계도서는 구청건설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

1980.11.29.

동 대 문 구 청 장

○ 계획정비지구

구 간	연 장	비 고
전동2동 620-1호 - 전동2동 620-69까지 (동일가구) (맘모스백화점)	330 m	도로좌우전면 건물부분
제기1동 635-22 - 청량1동 266번지까지 (대오약국) (삼석전자대리점건물)		

공 고

1980.11.1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공고제 366 호

영동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와  
환지에정지 변경 지정 공고

계획 변경 내역  
가. 사업명 : 영동추가 토지구획정리  
사업  
나. 변경면적 : 11,743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방배동 210의  
2 의 89 필  
라. 변경내용 : 환지계획변경 및 새  
도로 일부폐지  
※ 도서는 생략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244 호 (80. 7.31) 로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한 영동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일부 환지에 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4 조 및 제 55 조와 동시행명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 변경지정 공고한다.
2. 계획변경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 서울특별시공고제 368 호

전기용품제조업 허가취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4 조에 의  
한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다음  
과 같이 취소하고 동법제 26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0.12.  
서울특별시



다 음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구분	취소사유
동원전기산업사	정영규	독산동616-5	1-7-110	전열기구 류제조업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7 위반

◎ 서울특별시 공고제 373 호

KS 표시 정지 처분 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외거 아래와 같이 KS ( 한국공업규  
격 ) 표시 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  
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0.12.10.

서울특별시장

허가번호 : 제 604 호

허가일자 : 80. 1. 25.

제조업체명 : 남영전구공업 (주)

대표자 : 남 상 준

소재지 : 서울 성동구 성수동 1 가  
13-214

규격번호 : KSC 7501

품 명 : 일반조명용 백열전구

종류및등급 : L110V, 100W, L220V, 60W

처분기간 : 처분일로부터 3 개월

처분일자 : 80. 12. 10.

처분사유 : 규격미달

◎ 서울특별시 공고제 374 호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일부준공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35 호 ( 78. 4. 3 ) 및 동 고시 제 232 호 ( 78. 5. 24 ) 로 시설 준공 및 지적 승  
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351 호  
( 78. 7. 12 ) 로 시행 허가된 도시  
계획사업 ( 학교 : 미림여중, 고교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준공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제 57 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66 조의  
3, 건설부고시 제 463 호 ( 79. 12. 10 )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  
고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2.11.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  
동산 66-1 외 6 필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 학교 ) 미림여자중, 고등학교	다. 사업시행면적 : 35,928 ㎡ ( 추가 허가면적 포함 ) 라. 금회준공면적 : 29,291.6 ㎡
--	--

위 치	허가시 지번	신 지 번	지 적	비 고
판악구신림동	산 66- 1	1557-1	29,030.7 ㎡	지적은 측량 성과도에 의 함.
"	808-246	1557-2	55.4 ㎡	
"	298-	1557-3	197.5 ㎡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재단법인 소화학원 이사장  
이 하 영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1) 착수 : 78. 7. 12.  
2) 준공 : 80. 12.

사. 준공내용 : 별첨 측량 성과도 및  
설계도서와 같음.  
\* 준공 도면 게재 생략

예 규

◎ 서울특별시에 규제 398 호

서울특별시고압가스 사무처리요령

제 1 조 ( 목적 ) 이 요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이하 법이라 한다 )  
제 3 조 및 동법 시행령 ( 이하 영이  
라 한다 ) 제 6 조의 범위내에서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업에  
관한 허가기준과 법제 20 조에 의 한

행정처분등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허가절차 ) ① 법제 3 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 저  
장, 판매업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에는 별표 1 의 각호의 사항을 확  
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 법 시행규칙 별표  
2 ) 3 부  
3. 정관 및 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른 법  
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제외한다 )  
4. 신청인 ( 법인의 경우 그 대표  
자 ) 의 신원증명서

<p>5. 시교육관의 인정서 (학교 보건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내에서 액화석유가스 또는 일반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의 경우에 한한다)</p> <p>6. 안전관리자의 채용 신고서</p> <p>7. 공급계약서 사본 (액화석유가스 제조의 경우에 한한다)</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계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에 적합 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의뢰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기술검토 의뢰시는 사업계획서 3 부를 첨부하여, 의뢰하며 그중 2 부를 회송받아 1 부는 허가관청이 보관하고 1 부는 신청자에게 교부하여 시공시는 이에 적합하게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 3 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경 사유서</li> <li>2. 대표자의 신원 증명서</li> <li>3. 허가증 원본</li> <li>4. 사업계획서 (사업장 소재지 또는 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 부</li> </ol>	<p>5. 안전관리자 채용신고서 (시설의 변경으로 안전관리자의 채용구분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사업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허가의 경우는 제 2 조 제 4 항의 규정의 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p> <p>제 4 조 (허가증의 교부) 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세를 납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교부하며 (시설변경이 아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면허세 납부 확인 (다만, 법인의 단순한 대표자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사업 개시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 5 조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제한 기준) ①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제한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제한 기준이 경합될 때에는 가장 중한 기준에 의하여 위반회수의 적용은 1 년내 처분사항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위반사항에 대하여 정상을 창작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수급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 1 항의 기준을 경감하여</p>
---	---

<p>처분하거나, 가스별로 시설을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p> <p>제 6 조 (허가취소등의 통지) ① 허가취소, 업무정지, 제한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시체없이 그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p> <p>③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 기간중 추진기 또는 보관실 출입문등을 별표 3 서식의 봉인지로 폐쇄 봉인하고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저장 시설내의 저장량을 확인하여야 한다.</p> <p>제 7 조 (관리대장)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허가사항, 및 안전관리자, 변동사항과 처분사항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	<p>제 8 조 (허가 및 처분사항 보고) 구청장은 고압가스 저장, 판매업소에 관한 허가사항의 변동 또는 허가취소, 업무정지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허가 및 처분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p> <p>③ (준용) 고압가스 용기 기구기구 제조 수리업소 및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업소의 처분시는 본 요령을 준용하여야 한다.</p>
--	---

<별표 1> 허 가 기 준

구 분	기 준	관 계 법 령
제조허가	<p>1. 신청인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이 다음 각호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것.</p> <p>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법제 6 조

구분	기준	관계 법령
	4)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사업계획서의 시설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에 적합할 것 (단, 액화석유가스, 암모니아, 염소의 경우는 저장탱크지하, 기계실 지상 설치) 3. 정수 (T/O) 범위내일 것 (LPG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에 한한다) 4. 도시계획법 건축법 소방법 기준에 적합할 것 5.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와 300 m) 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액화석유가스 및 일반고압가스에 한한다) 6. 공업배치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7. 업소간 거리물 1km 이상 유지할 것 (오토 지자동차 충전소에 한한다) 8.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기준에 적합할 것 9. 용기보관실은 30 평방미터 이상 사무실 (관리실) 은 10 평방미터 이상 확보할 것 (용기 충전소에 한한다) 10. 시청을 기점으로 하여 도심 반경 5 키로미터 이내 지역이 아닐 것	법시행규칙 제 5 조  영 제 6 조 제 3 항  영 제 6 조 제 1 항 3 호  *  *  영 제 6 조 제 3 항  영 제 11 조 영 제 6 조 제 3 항  *
저장허가	1. 신청인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이 다음 각호 1 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1) 금지산자 또는 한정지산자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과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 제 6 조

구 분	기 준	관 계 법 령
	2. 사업계획서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에 적합할 것 (단, 액화석유가스, 염소, 암모니아는 저장탱크지하, 기계실지상 설치) 3. 도시계획법 건축법, 소방법 기준에 적합할 것 4.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와 300미터)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5. 안전관리자의 채용은 기준에 적합할 것	법시행규칙 제 5 조  영 제 6 조 제 1 항 3 호  영 제 11 조
판매허가	1. 신청인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이 다음 각호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1)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 선고불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사업계획서의 시설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에 적합할 것 3. 보관 능력 3톤이상의 경우 보안거리를 유지할 것 (보관 능력을 산정할 다른 기준이 없는 경우는 판매사업계획서의 용기 보유량에 의하거나, 보관실 면적 10평방미터를 1톤 보관 능력으로 산정한다)	법 제 6 조  법시행규칙 제 5 조

구 분	기 준	관 제 법 령
	<p>4.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기준에 적합할 것</p> <p>5. 엘피가스 판매소는 다른 엘피가스 판매소와 일반가스 판매소는 다른 일반가스 판매소와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을 유지할 것.</p> <p>6. 용기 보관실은 보안벽외에 외벽 및 지붕을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하고 15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만 가연성가스 산소 및 독성가스의 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되 가장 작은 보관실의 면적을 5평방미터 이상으로 하여 보관실 중 면적을 15평방미터 이상 확보할 것</p> <p>7. 사무실(관리실)은 5평방미터 이상 확보할 것</p> <p>8. 건축법에 의한 허가 건물로서 그 용도가 점포 또는 창고인 건물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보안 시설내에는 허가할 수 없다.</p> <p>9. 학교환경위성정화 구역내에 저축(학교와 300미터)되지 아니할 것. (단, 시교육감의 인정시 가능)</p>	<p>영제11조</p> <p>영제6조제3항</p> <p>,</p> <p>,</p> <p>,</p> <p>,</p>

<별표2>

가스취소등처분기준

위반항목	위 반 내 용	관계법규	처 분		
			1 회 위반	2 회 위반	3 회 위반
허가기준부적합	1.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허가 를 받은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을 위반하여 형의 신고를 받 은 때 (범인의 경우 1인포함) 2.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업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 6 조 법 제 3 조	업무정지 10일 시정 명령 (30일 이내)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시정완료 시 까지)	허가취소 허가취소 (업무정지 후 3월초 복시)
허가사항변경	1. 대표자 변경허가 불이행 2. 시설, 공정, 가스의 종류, 사업 소의 위치 변경허가 불이행	법 제 5 조 경 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3일 " 30일	업무정지 5일 허가취소
품질 검사	1. 품질검사 불이행	법 제 3 조 경 고	"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5일
신고	1. 사업개시, 휴지, 폐지, 재발신고 불이행	법 제 7 조	"	"	"
공급자의 의무	1. 유통 단계별 수요자에게 위해예 방조치 불이행 및 신고 불이행 2.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시설업소 및 완성(보안) 검사 미필업소에 가스 공급 3. 불법 알리지 택시에 가스 공급	법 제 8 조 및 제 24 조 법 제 8 조	" 업무정지 3일	" 업무정지 5일	" 업무정지 10일 허가취소

19-16 보 813 호

나

보

1980.12.11



위반 항목	위 반 내 용	관계법규	처 분		
			1 회 위반	2 회 위반	3 회 위반
안전관리자 채용	1. 안전관리자 채용구분 부적합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법제 10 조	경 고	업무정지 (시정완료 시까지)	허가취소 (업무정지 후 3월을 초과시)
완성 (보안) 검사	1. 완성 (보안) 검사 개선명령 불이행	법제 11 조	업무정지 (시정완료 시까지)	허가취소 (업무정지 후 3월을 초과시)	
가스 운반	1. 가스운반 기준 미준수	법제 23 조	경 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5일
용기 검사	1. 미검사 용기에 가스 충전 판매 ○ 10 개 미만 ○ 10 개 이상 20 개 미만 ○ 20 개 이상	법제 15 조	업무정지 5일 " 10일 " 30일	업무정지 10일 " 30일 허가취소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기기, 기구의 검사	1. 검사를 받지 않은 기기, 기구를 양도 임대 또는 사용한 때	법제 18 조	경 고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10일
용기 관리	1. 충전 판매대장 및 보존불이행 2. 용기 보관 관리 기록을 위반한 때 3. 충전용기 도색 및 분자 표시 불이행 ○ 10 개 미만 ○ 10 개 이상 20 개 미만 ○ 20 개 이상	법제 16 조 " "	" " "	" " 업무정지 2일 " 3일 " 5일	" " 업무정지 3일 " 5일 " 10일

제 813 호

노

표

1980.12.11

19-17

위 반 항 목	위 반 내 용	규 제 법 규	처 분		
			1 회 위 반	2 회 위 반	3 회 위 반
위해예방규정	1. 자체 위해예방규정 지시 및 준수 기록 보존 불이행 행위 기록	법 제 13 조	경 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5일
보고 검사	1. 보고검사 또는 수거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 27 조 및 제 28 조	"	"	"
수입 신고	1. 수입한 자의 신고 불이행 및 허위 신고 행위	법 제 21 조	"	"	"
보안 교육	1. 보안교육 대상자의 교육 미이수 행위	법 제 26 조	"	"	"
증 지	1. 실량표시증지 (엘피지) 미부착 또는 품질표시증지 (산소, 수소, 아세틸렌) 미부착 ○ 10 개 미만 ○ 10 개 이상 20 개 미만 ○ 10 개 이상	법 제 3 조 및 가스사업법 제 25 조	" 업무정지 5일 " 10일	업무정지 5일 " 10일 " 20일	업무정지 10일 " 20일 " 30일
정량 관리	1. 고압가스의 실량 부족 충전 판매행위 (계량법상 허용공차 초과 시) 2. 고압가스 판매자가 불법 이송진 행위를 한 때	가스사업법 제 25 조 법 제 3 조	" 5일 " 15일	" 10일 " 30일	" 20일 허가취소
지시 명령	1. 허가 관청이 위해 방지를 위하여 발한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이행 한 때	영 제 6 조	경 고	" 3일	업무정지 5일

19-18 제 813 호 시 1980.12.11

< 별표 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되고  
 봉인함.

러가 없이는 봉인지의 훼손 및 제조 시설의 가동등 업무(영업)  
 행위를 일체 금함.

년                  월                  일

○ ○ ○ ○ ○ 강 ○

※ 9 cm X 40 cm

정                  정

1. 시보 제 809 호 (80.11.19) 로 게재한 서울특별시 전산업무처리 규정  
 (예규 제 391 호) 의 내용 일부가 누락 오자가 있으니 정정하여 추  
 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사항

조 항	페이지	정 정 사 항	비 고
제 1 조	45 페이지 7째줄	진공실을 천공실로	오 자
제 5 조 1 항	46 페이지 12 "	경후를 경우로	"
" "	" 15 "	조직을 로직으로	"
제 5 조 3 항	" 끝 줄	과 난테크니컬 디스크립션을 작 하여야 한다와 제 6 조 전항이 누락됨	누 락

서울특별시자